

제336회 도의회 정례회 2차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2022. 11. 28.(월)

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대진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대진·한창화·박승직·김원석·강만수·이춘우·박성만·
김창혁·김진엽·최병근·이형식·이선희·박용선·김용현·
최병준·백순창·남진복·허 복·박창석·박순범 의원(20명)

2. 제정이유

-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로 유도표지 등 옥상 피난설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안전한 피난 방안 마련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

지원을 규정함(안 제5조)

- 입주자 등에 대하여 피난시설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함(안 제6조)

4. 관련법령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9조
- 「소방기본법」 제2조
- 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(NFSC303)」 제3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붙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붙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붙임
- 비용추계서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2. 11. 17. ~ 11. 22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05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필요성

-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로 유도표지 등 옥상 피난설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안전한 피난 방안 마련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지원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입주자 등에 대하여 피난시설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함(안 제6조)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공동주택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로 유도표지 등 옥상피난설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

- 제정 취지와 내용,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9,690백만원의 소요비용이 추가 될 것이라고 추계되므로 옥상피난 설비 설치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